

토 론 문

은성욱

손승우 교수는 IBM 사건을 소개하면서, IBM이 FSI社 및 PSI社에 대하여 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중단한 행위를 (i) 선택적인 거래거절 행위가 존재한다는 점, (ii) 구버전 사용을 제약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였다는 점, (iii) 라이선스 거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독점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 거절에 대한 독점규제 방안으로서 미국과 EU의 입장을 개괄하고, 2010. 3. 31.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간략히 소개하였으며, 구제조치로서 강제실시의 문제를 논한 뒤에 지식재산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제한적 권리이므로 그 남용사례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규제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손승우 교수의 입장은 최근 시장지배적 IT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행사를 통하여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시도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러한 남용행위의 피해기업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 법제가 권리남용 인정에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법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남용행위 규제를 지지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IBM 사건이 라이선스 거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기회라는 중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발표문에서 IBM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단계적 법적 분석과 이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과 법무부의 접근 방법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소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즉, 이 사건 특허 거절에 있어서 관련시장 확정의 문제, 공정거래저해 효과 내지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등 위법성 분석 과정과 T3사의 주장을 배척한 미국 법원의 논리 및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제시되었다면 보다 의미있는 발표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발표문을 검토하면서 드는 의문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①먼저 미국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거래거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에 반하여 EU는 미국보다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특허기술 보유국과 라이선스를 받는 국가간의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강한 규제로 인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의욕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을지?

②위법한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거절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경쟁당국 또는 법원에 의한 강제실시가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특허법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을 위하여 특허청장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규정을 두고 있는바 (특허법 제107조), 이러한 특허법상 재정 규정과 강제실시 처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하는지?